임원퇴직금규정

제 정 2007. 2. 7 개 정(1) 2008. 9. 4 개 정(2) 2014. 8. 26 개 정(3) 2023. 1.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사유) ①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 2. 의원퇴임
 - 3. 해 임
 - 4. 사망으로 인한 퇴임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퇴직금 적립 및 지급) ①퇴직금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에 1/12을 곱한 금액을 매 해당연도말에 적립한다. 다만 개별고용계약을 맺어 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따른다.
 - ②퇴직 당해연도 퇴직금은 성과급 지급률 확정후 지급한다.
 - ③국외지사 재직중 퇴임하는 본국 임원의 퇴직금은 국내근무중 퇴임하는 임원에 준하여 산출한다.
 - ④이사·감사 및 사장을 연임하여 근속한 경우의 퇴직금은 각 직위별로 재임기 간 및 기본급과 성과급을 구분하여 각각 1/12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 직무대만,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으로 징계면직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원이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나 형사재판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퇴직금 감액분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6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퇴임하는 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정 함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